

의안번호	제69호
의결연월일	2020. 6. 22.

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6월 15일 논산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0년 6월 15일

다. 상정일자 : 2020년 6월 22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 설명자 : 100세 행복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하여 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관리 조례를 정비하고,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삭제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4항의 위임이 없는 공설장사시설 이용허가 규정을 삭제(안 제1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